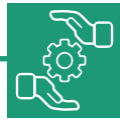


자료



- 마스크를 포함하여 호흡용 보호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h.lacounty.gov/masks를 참조하세요.
- Cal/OSHA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<https://www.dir.ca.gov/dosh/coronavirus/COVID19FAQs.html>를 방문하세요.
- 유급 휴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<https://www.dir.ca.gov/dlse/COVID19Resources/2022-SPSL-FAQs.html>를 방문하세요.
- COVID-19로 인해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 신청하려면 https://www.edd.ca.gov/about_edd/coronavirus-2019/workers.htm를 방문하세요.
- 고용주 및 정부 지원 유급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<https://www.saferatwork.la/employees>를 방문하세요.
- Cal/OSHA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<https://www.dir.ca.gov/covid/workplace-issues.html>를 방문하세요.
- 공중 보건 위원회는 의류 제조업, 식품 제조업, 창고 및 보관업, 식당, 식료품 및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봉사합니다. 당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<http://publichealth.lacounty.gov/media/coronavirus/phcouncils/index.htm>

귀하가 COVID-19에 감염되면 심각한
증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일 경우
직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
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.



귀하가 COVID-19에 걸렸을 때 심각한 증병으로 이어질 고위험군일 경우 직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.

- (1) 고용주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요청하세요. 실내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또는 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있을 때 항상 착용하세요.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"이중 마스크 착용"(의료용 마스크 위에 잘 맞는 천 안면 마스크 착용)을 시도해보세요.
- (2) 근무 조건이 괜찮다면 타인과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세요.
- (3) 휴식 시간에 식사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세요. 실내에서 주변에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면, 창문과 문을 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유지하세요.
- (4) 안전한 경우 근무지의 창문이나 문을 여세요. 신선한 공기는 공기 중에 퍼지는 비말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 COVID-19에 걸릴 위험을 저감합니다.
- (5) COVID-19에 걸리면 COVID-19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고,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약품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5-7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.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(833) 540-0473로 전화하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ph.lacounty.gov/covidmedicines에서 확인하세요.

근로자 권리 소책자 콘텐츠입니다. 현재 게시물 보기:

http://publichealth.lacounty.gov/media/Coronavirus/docs/business/Workers_Rights_Pamphlet.pdf.



COVID-19 안전: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권리

Los Angeles County
Department of Public Health
www.publichealth.lacounty.gov
10/3/22



COUNTY OF LOS ANGELES
Public Health

COVID-19 안전: 캘리포니아 근로자 권리



Cal/OSHA에 따라 고용주는 COVID-19에서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반 사항은 아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:

- 본인의 노조 대표와 이야기하기.
- 833-579-0927로 전화하여 Cal/OSHA에 불만사항을 알려주세요.
- 공중 보건 복지부에 888-700-7995로 (월요일~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운영)에 문의하여 불만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. 불만 사항은 익명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.



직원 훈련

- 귀하의 고용주는 직장에서 COVID-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. 고용주들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COVID-19 예방 계획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주 [Cal/OSHA 규정](#) 하에 근로자의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.

개인 보호 장비 (또는 "PPE")



-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하거나 한 명 이상이 차량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에게 잘 맞는 마스크 및 의료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. 귀하가 N95(NIOSH 인증) 마스크를 요청하면 고용주는 마스크의 적절한 크기와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모든 고용주의 안전 요건과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호흡용 보호구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. 이것은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에게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를 주고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일하는 동안 얼굴 마스크를 착용한 것에 대해 쓰지 않거나 하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.
- 모든 마스크가 어느 정도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만, 특히 N95와 같이 잘 맞는 호흡용 보호구가 최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호흡용 보호구가 손상되거나 변형되거나, 찢거나, 더러워지거나, 호흡하기 어렵거나, 더 이상 잘 맞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. 호흡용 보호구를 용하는 경우, 폐기하기 전에 착용을 얼마나 오래할 수 있는지 제조업체의 지침을 확인하세요. 의료용 마스크는 한 번 착용한 후 버려야 합니다.

손 씻기 위한 시간과 용품



- 고용주는 비누와 물 및/또는 손 세정제가 비치된 손 씻기 스테이션을 제공해야 합니다. 직장 및 귀하가 탑승할 수 있는 모든 차량에 배치해야 합니다.
- 또한 고용주는 귀하가 손을 씻거나 손을 위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근무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.

본인의 권리를 알아 두세요.

COVID-19 검사



- 고용주는 다음의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동안 무료로 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.
 - COVID-19 증상이 있는 경우
 - 지난 90일 동안 COVID-19에서 회복되어 증상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직장에서 COVID-19와 밀접 접촉했거나 직장 내 발병 중에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.
 - 직장에서 노출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거나 격리된 상태에서 더 빨리 직장에 복귀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.
- 검사는 고용주, 주치의실 또는 보건소, 지역 보건부 또는 지역사회 검사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검사 시간(검사소 왕복 이동 포함)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모든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 또한 검사 장소 (예: 마일리지 또는 대중교통)로의 이동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.

유급 휴가



- 만약 귀하가 COVID-19에 걸렸거나 근무 중 COVID-19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집에 머무르도록 요청받는다면, 귀하의 고용주는 유급 휴가(배제수당으로도 알려져 있음)를 제공해야 합니다. 고용주는 귀하가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 동안 귀하의 정규 임금을 귀하에게 지불해야 합니다.
- COVID-19 보충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통해 COVID-19 백신 접종, 백신 관련 증상 회복, COVID-19에 걸리거나 격리가 필요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COVID-19 보충 유급 병가 포스터 및 자주 묻는 질문(FAQ)를 참조하세요.

직장에서 COVID-19의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나요?



- 본인의 노조 대표와 이야기하세요.
- 833-579-0927로 전화하여 Cal/OSHA에 불만을 알려주세요.
- 공중 보건복지부에 888-700-7995로 전화하여 불만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.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